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6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조은희 • 이만희 • 이달희

이양수 · 최수진 · 강선영

조배숙 · 김소희 · 박정하

신동욱 · 서일준 · 김 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77명)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 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른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고발된 때를 말한다. 이하 제135조의2제5항에서 같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고발된 사람에 대한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른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선거비용을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
	른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
	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
	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
	발된 때를 말한다. 이하 제135
	조의2제5항에서 같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후
	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 제1
	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을 유
	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
	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
	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금을 지체 없이 반
	<u>환하여야 한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第135條의2(選擧費用補塡의 제한)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 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른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그 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이 경 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선거 비용을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